

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발 의 자 : 박춘선 의원 외 28명
- 의안번호 : 제1341호
- 발의일자 : 2023년 10월 16일
- 회부일자 : 2023년 10월 23일

2. 제 안 이 유

- 기후위기에 따라 도심 내 녹지 확보와 유지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옥상 녹화지를 우수하게 관리하고 있거나, 옥상녹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시장이 표창할 수 있도록 하여 옥상녹화에 대한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옥상녹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표창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제1항)
- 나. 우수한 옥상녹화 사례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제2항)

4. 참 고 사 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미첨부사유서) 참조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심 내 녹지 확보와 유지관리를 위해 옥상녹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시장이 표창할 수 있도록 하여 옥상녹화에 대한 저변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“옥상녹화” 사업은 건축물 옥상에 식물을 식재하여 생태적, 경관적 효용을 얻기 위해 시행하는 녹화사업으로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한편, 시민 휴게공간과 생물 서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공간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음.
- 옥상녹화는 도시녹화의 여러 형태¹⁾ 중 하나의 종류로 서울시는 2007년 「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」²⁾를 제정하여 도시녹화 및 옥상녹화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해왔으며, 2020년에는 동 조례를 제정하여 옥상녹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였음.
- 서울시는 2002년부터 옥상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, 2023년까지 총 785개소(328,133㎡)의 옥상녹화지를 조성하였으며³⁾, 2024년에는 7억 9천9백만원을 편성하여 8개소⁴⁾에 추가 조성할 계획임.

1) 옥상녹화, 가로정원, 학교통학로, 에코스쿨(학교 내), 공개공지, 골목가꾸기, 담장녹화, 벽면녹화(수직정원), 빈집 활용 생활정원, 지하철(역사) 주변·철도변·주차장 녹화 등

2) 제1조(목적) 도시녹화 사업을 위해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3) 옥상녹화 사업현황(2002년~2023년)

-사업건물수: 총 785개소(민간 399개소, 공공 386개소)

-옥상녹화 면적: 328,133㎡

-누적예산: 총 752억 4천8백만원

4) 2024년 계획 대상지(안): 구로구의회, 성북경찰서, 이화동주민센터, 온조대왕문화체육관 등 8개소

- 한편, 동 조례는 지난 5월 일부개정을 통해 협약기간을 연장한 옥상녹화 조성지에 대해서도 수목보식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옥상녹화 대상지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유도하는 한편, 녹지율 기준을 완화하여 옥상녹화 사업 활성화를 도모한 바 있음.
- 본 조례안은 옥상녹화에 대한 저변 확대를 위해 옥상녹화지를 우수하게 관리하고 있거나,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시장이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옥상녹화 사업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고 옥상녹화지 유지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한편, 안 제13조제1항 ‘옥상녹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’과 같은 조 제2항 ‘유지관리가 우수한 사례’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, 이를 통해 선별한 우수사례를 홍보하여 공공과 민간의 참여율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임.

또한, 옥상녹화 사업이 단순한 시설 조성에 머무르지 않고 서울시 내 지속 가능한 생태조경의 사례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.